

6 박물관안내

1. 박물관 현황

가. 연혁

- 1994. 09. 28 : 개교 15주년을 기념하여 박물관 헌판식
- 1995. 03. 27 : 박물관 개관식
- 1999. 12. 20 : 정헌실 개관(정헌선생 서화 작품 기증 81점)
- 2011. 9. 30 : 자연사 박물관 개관

나. 유물현황

금속류	옥석류	토도류	골각류	목죽류 조칠류	피모류 지직류	서화류 탁본류	편직류 제품류	기타	계
45	15	82	4	179	14	163	21	72	595

다. 자연사 관련 표본 현황

패류	화석류	화폐류	계
4,615	169	6,000	10,784

라. 박물관 홈페이지 : <http://cyber.hoseo.ac.kr>

- 호서대학교 박물관 및 정헌실 자료 전시

2. 자연사 박물관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위치) 본 자연사박물관은 호서대학교 자연사박물관(이하 “본관”이라 한다) 이라 칭하고 호서대학교 내에 둔다. (개정 2011.9.1)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본관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업무) 본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9.1)

1. 자연사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및 전시
2. 전문서적과 각종 사진의 비치
3. 본 대학교 사료의 수집, 정리
4. 기타 본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 2 장 조 직

제4조 (관장) ① 관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1)

② 관장은 업무 전반을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본관은 업무를 위하여 사무실 및 작업실을 둔다. (개정 2011.9.1)

제5조 (운영위원회) ① 본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위원장 : 박물관장

2. 위 원 : 사무처장, 기획처장 및 해당분야를 전공했거나 조예가 깊은 본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9.1, 2015. 5. 1)

3. 간 사 : 담당 팀장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 소집하며, 본관 운영에 대한 기본계획과 자료수집에 대한 회의를 한다.

제 3 장 재 정

제6조 (재정) ① 본관의 재정은 교비지원금, 사업수익금,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② 본관의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본관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 4 장 소 장 품

제7조 (소장품의 종류) 본관의 소장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9.1)

1. 본관이 수집한 자연사에 관련된 광물, 암석, 식물, 동물, 화석 및 민속자연사자료

2. 구입품

3. 수증품

4. 위탁품

제8조 (수집방법) 본관의 소장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수집한다.

1. 본관의 조사와 발굴로 수집된 자료는 본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구입품은 운영위원회의 평가와 감정을 거쳐 구입한다.

3. 수증품과 위탁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 5 장 관 략

제9조 (관람시간과 휴일) ① 본관의 전시품 관람시간은 9:30 ~ 17:00로 한다. 다만, 관장은 필요에 따라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9.1)

- ② 본관의 휴일은 본교의 복무규정에서 정하는 휴일과 같다.
- ③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관계없이 관장은 개관 또는 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자격) 본관 소장품을 관람할 수 있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 1. 본교의 교직원 및 학생
- 2. 기타 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제11조 (관람자 준수사항) 관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관장의 허가 없이 소장품에 손을 대지 못한다.
- 2. 관장의 허가 없이 소장품의 촬영, 모사, 탁본을 할 수 없다.
- 3.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하는 물품의 휴대를 금한다.
- 4. 전시실 내에서는 흡연, 잡담을 금한다.

제12조 (제재) 관장은 관람자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 (관리) 박물관의 소장품은 총장의 승인 없이는 관외로 반출하지 못한다. 다만, 학술단체,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출품의뢰가 있거나 소장품의 정리 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할 수 있다.

제14조 (변상) 관람자가 소장품을 파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관장 또는 운영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6 장 보 칙

제15조 (위임규정)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세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